

哥板紙包裝·物流產業政策

Corrugated Packaging & Logistics Industry Policy

이 난은 골판지포장 산업과 물류 산업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계 정책 건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97 中小企業政策

97年度 中小企業 育成

資料 : 通商産業部, 中小企業廳

目 次

■ 97年度 中小企業 育成施策의 基本方向

1. 中小企業 經營與件의 變化
2. 97年度 中小企業 育成施策의 基本方向

■ 97年度 中小企業 育成施策

1. 競爭力의 強化
2. 經營安定 基盤의 構築

1997년도 中小企業育成基本方向

基本方向

1. 中小企業 經營與件的 變化

- 開放의 進展에 따른 企業間 競爭의 심화
 - 우리 경제의 開放의 進展과 WTO體制의 본격적인 가동 등으로 國內市場 뿐만 아니라 海外市場에서 企業間 競爭이 심화되고 있음.
- 消費者 욕구의 변화
 - 所得水準의 향상 및 經營開放의 진전 등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더욱 고급화·세분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욕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製品開發週期가 단축되고 있음.
- 최근의 景氣鈍化 및 高費用 構造
 - 최근 우리 경제는 半導體 등 수출주력품목의 가격하락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등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음.
 - 또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賃金과 金融費用, 높은 物流費 및 工業用地 價格 등의 고비용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등 우리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움.

2. 97年度 中小企業育成施策의 基本方向

- 中小企業의 競爭力의 提高
 - 企業間 競爭의 심화, 소비자 욕구의 고급화·다양화·세분화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
 - 이를 위하여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 향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설비현대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자금, 인력 등 각종 지원수단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산업의 저변 확충 도모
- 經營安定基盤의 강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 특히, 중소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자금 및 담보력의 부족, 낮은 상품 이미지, 거래관계에서의 협상력 부족 등 중소기업의 경영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
- 現場密着的인 支援體系의 構築
 - 개별 중소기업 중심의 증시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닿는 현장밀착적인 지원을 강화
 -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및 그 지방조직을 통하여 개별 중소기업 또는 업종별 지원과 실태조사 기능을 강화

- 또한, 현장밀착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각종 경영동향,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 中小企業構造의 점진적인 改編
 - 우리 산업의 저변 확충과 지속적인 고용기회의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 특히, 경제 및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및 기술분야에서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구조의 신진 대사를 촉진
 -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확대와 함께 기술집약형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

中小企業育成施策

1. 競爭力의 強化

가. 經營能力的 提高

- 經營革新教育 확대 실시
 -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능동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경영혁신교육을 실시하여 경영혁신 분위기 확산도모
 - 98년까지 20인 이상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전원 교육 실시 예정
 - 경영혁신교육 : (96) 6,900명 → (97) 11,800명
- 技術革新教育의 지속적인 실시
 -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추진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술혁신기법에 관한 교육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간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기술혁신교육 : (96) 5,000명 → (97) 5,000명
 - 업종별 또는 기술분야별로 최근의 기술동향, 발전전망, 유망기술분야 등에 대한 소개와 기술개발 성공사례 발표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마인드

나. 構造改善事業의 지속적인 推進

- 構造改善事業의 확대
 -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97년중 2조원의 구조개선자금을 6,000여개 업체에 지원
- 중소기업복권 판매를 통하여 구조개선자금의 이익보전
 - 복권발행 규모 : (96) 780억원 → (97) 1,145억원
- 支援對象의 확대
 - 중소기업외에 제조업겸업 유통업, 정보 통신 소프트웨어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시설 및 공장 집단화 등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확대 추진
 - 지원규모 : (96) 1,749억원 → (97) 1,791억원
- 自動化 支援센터의 機能 活性化
 - 중소기업의 생산자동화를 위한 진단 및 지도를 확대 실시
 - 자동화 연수규모 : (96) 11개 과정 700명 → (97) 19개 과정 1,460명
 - 자동화 지도업체 : (96) 250개 → (97) 400개
 - 생산공정 자동화를 위하여 자동화 시스템 S/W 개발 및 보급 확대

다. 技術 및 品質 水準의 提高

-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신설
 - 중소기업의 주요 요소기술 개발과 첨단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신설
 - 지원규모 : (97) 300억원
 - 지원한도 : 개별기업 단독개발 1억원, 공동개발 1.5억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확대
 - 연구시설 및 인력이 풍부한 지방대학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을 대폭 확대
 - 지원규모(재정) : (96) 60개 70억원 → (97) 70개 81억원
- 隘路技術의 發掘 및 技術指導의 강화
 -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대책 수립
 - 국립기술품질원, 생산기술연구원 등을 통하여 55개 품목의 2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애로기술 실태조사
 - 기술지도의 강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술지도기관을 통하여 생산기반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 중기청 및 중진공 : (96) 4,288개 → (97) 4,900개
 - ISO 9000 및 ISO 14000 확산을 위한 지도 실시
 - ISO 9000 지도 대상업체 : (96) 200개 → (97) 250개
 - ISO 14000 지도 대상업체 : (96) 30개 → (97) 50개
 - 공장혁신(Re - factory)지도 실시
 - (96) 128개 → (97) 200개

■ 海外技術交流 및 國際認證獲得 지원 강화

- 국내의 기술도입 희망 중소기업에게 외국의 기술원 및 공동 기술개발업체를 알선해 주는 해외기술협력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진흥공단(국제화사업처)을 창구로 하여 중소기업의 해외기술협력을 적극 지원
- 해외인증 안내책자 발간·배포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 강화

■ 企業間 技術協力 및 교류의 확대

- 이업종 교류사업의 활성화
 - 기술의 융합화현상 등에 대응하고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및 공동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이업종교류회 결성의 지속적인 확대 및 유인방안 강구
 - 이업종교류회 : (96) 270개 그룹 4,000개 업체 → (97) 300개 그룹 4,250개 업체
 - 이업종 교류전문가 양성교육의 실시
 - 신규양성 : 50명, 보수교육 : 100명
 - 『이업종 교류의 날』 개최 등을 통하여 이업종 교류 성공사례 발표 및 우수이업종 교류사업에 대한 포상 실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 및 품질협력 유도 및 지원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한도예외증정 범위를 확대
 - 출자총액한도예외인정 범위 : (현행) 10% → (확대) 15~ 20%
- 수탁기업체협의회 결성을 유도하여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을 강화
 - 수탁기업체협의회 : (96) 129개 → (97) 135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등에 대한 세제 지원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하는 기술지도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업종 및 비목 추가
 - 공제대상업종 : 건설업, 광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추가
 - 공제대상비목 : 국외전문기관 위탁교육비, 국내외 이공계 대학·기업체 위탁 훈련비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 제조업에 한정된 공제대상업종을 제조업 이외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동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추가
 - 중소기업의 사무자동화 지원
 - 중소기업에게 사무자동화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특례를 허용하여 전액 손비인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익금 불산입하여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
 -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게 무상지원하는 경우에도 적용

■ 『100PPM 品質革新事業』의 지속적인 확산

- 모기업별·업종별로 『100PPM 표본업체』를 선정하여 집중지도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여 100PPM 품질혁신 사업의 지속적 추진
 - 표본업체 : (96) 200개 → (97) 200개 추가

- 100PPM 추진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등을 통하여 100PPM 추진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 추진인력 양성 : (96) 7,000명 → (97) 8,000명

라. 技術革新型 中小企業의 創業 촉진

- 스톡옵션제도의 시행
 -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스톡옵션제도를 시행
 -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처분시 옵션프리미엄 및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신기술보육사업의 확대
 - 신기술보육사업(TBI :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수행기관을 확대(현행 4개)하여 수행기관간 경쟁 촉진 및 신기술보유자의 선택 확대
 - 신기술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 지원규모 : (96) 20억원 → (97) 25억원
- 창업투자재원의 확충
 - 창업지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의 지속
 - 창업지원자금에 대한 재정 출연 : (96) 170억원 → (97) 170억원
 - 창업지원자금 조성규모 : (96말) 1,561억원 → (97말) 1,899억원
 - 창업지원 사업규모 : (96) 322억원 → (97) 339억원
 -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재원 확대 유도
 -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당연종합과세 제외)
 - 투자업력 제한 등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투자회사의 경영여건 개선 및 투자활성화 유도
- 創業保育센터의 建立 확대
 -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및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건립 확대
 - 97년중 총 5개를 추가건립하여 97년까지 총 20개의 창업보육센터 건립 운영
 -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실질적인 창업보육기능을 강화
- 創業에 대한 稅制支援 강화
 -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율을 5년간 50%로 통일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혜택 확대
 - 창업투자회사의 증권거래세(0.5%)를 면제하고 민간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 중소기업자의 업종전환시 뿐만 아니라 업종추가시에도 동일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 부여
 - 3년간 50%, 이후 2년간 30% → 5년간 50% 감면

마. 中小流通業의 競爭力 強化

- 去來市場의 再開發 등 활성화
 - 20년 이상된 재래시장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대한 자금지원
 - 시장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
 - 지원 규모 : (96) 800억원(재정 419억원) → (97) 1,400억원 수준(재정 719억원)
 -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연계법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을 촉진
- 소규모 점포의 현대화 지원
 - 97년중, 2,000개 소규모점포의 시설현대화 지속적인 지원
 - 지원 규모 : (96) 500억원(재정 211억원) → (97) 500억원 수준(재정 211억원)
 - 유통단체 등을 통하여 표준점포모델을 보급하고, 지역별 현대화 시범점포를 통하여 소규모점포의 현대화 확산
- 流通情報化 및 流通現代化 지원의 강화
 - 소규모점포 등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을 지원하여 유통비용 절감, 효율적인 상품기획 등 경영현대화 도모
 - 지원규모 (96) 70억원 → (97) 80억원
 - 중소유통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물류시설 및 물류정보망 구축 지원
 - 물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동창고 및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지원
 - 지원규모 : 공동창고 84억원(재정), 공동집배송단지 및 센터 434억원
 - 물류현대화를 위하여 물류표준화, 공동화 및 공동물류 정보망 구축 지원
 - 지원 규모 : 물류표준화 공동화 300억원, 공동물류정보망 30억원
- 中小流通業의 조직화 촉진
 - 상점가 입주업체의 조직화 및 협동화 촉진
 - 조합결성 촉진을 위하여 조합결성의 필요성, 설립절차, 공동사업 추진방법 등에 관한 경과설명회 개최
 - 97년중 총 15개 상점가진흥사업조합 결성 추진

바. 地方中小企業의 育成

- 地方中小企業 育成資金의 확대
 - 지방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지원규모 : (96) 7,622억원 → (97) 9,000억원 수준
 - 재정지원 : (96) 4,000억원 → (97) 4,608억원 수준
 - 15개 시 도에 대하여 발전정도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을 차등화
- 지방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강화
 -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건립 확대
 -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을 집단화함으로써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일괄서비스를 제공
 - (95) 광주, 대전 → (96) 인천, 전북 → (97) 3개 지역

- 1개 시 도당 50억원 지원
- 지방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청 지방조직, 기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부 등과의 정례적인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지방 중소기업 지원효과의 극대화 도모

2. 經營安定 基盤의 構築

가. 資金 및 信用支援의 擴大

■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 확대

- 중소기업 관련 예산의 확대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유통합리화자금, 신용보증기관출연 등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확대

내역	96 예산	97 예산	증감율(%)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20억원	8,056억원	27.5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400억원	400억원	-
유통합리화자금	434억원	814억원	87.6
신용보증기관 출연	5,000억원	6,000억원	20.0

- 중소기업 공제사업의 확대
 - 가업중소기업의 확대와 공제사업기금 규모의 확대
 - 기금조성 규모 : (96) 2,450억원 → (97) 3,000억원
 - 가업자수 확대 : (96) 10,000개 → (97) 12,000개 업체
 - 공제사업기금의 연쇄부도 방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1호 대출(연쇄부도 방지대출)의 비율을 상향 조정
 - 1호 대출 비율 : (96) 44.2% → (97) 53.0%
- 유망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자금 운영
 - 성장가능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유망하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 거래선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00억원(연리 7%,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保證 지원 확대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으로 신용보증여력 확충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확대
 - 신용보증기금 출연 : (96) 3,500억원 → (97) 4,000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 : (96) 1,500억원 → (97) 2,000억원
 - 기술개발 촉진,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 추진
 -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적극 유도

- 경기, 경남, 광주, 대구 (96. 하반기 예정) 등 4개 지역신보 기설립
- 인천, 대전, 부산 등에서 97년중 설립 추진중

-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보증여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 中小企業 金融隘路의 해소

-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의 지속적인 개최 및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추진

나. 人力的 원활한 供給

■ 外國人 産業技術研修生制度의 탄력적인 운영

-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을 보아 필요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추진
- 연수생 사후관리의 철저, 이탈연수생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정착 도모

■ 産業技能要員制度의 활용도 제고

- 산업기능요원의 확대공급을 위하여 보충역 입영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유도(兵役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복무기간 단축 : (현행) 36개월 → (97) 28개월
 - 기술자격요건 폐지 및 근무분야 제한 완화

■ 中小企業 人力需給 기능 및 遊休人力 활용 강화

- 예비취업자와 중소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채용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 국내에서의 채용박람회와 함께 해외채용박람회, 여성채용박람회 등으로 확대 추진
- 경영 및 기술 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퇴직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원로 봉사단』의 활용 확대
- 여성경제인에 대한 우대지원시책 강화
 - 구조개선사업 지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배정 등에 있어 우대 방안 강구
- 여성 등 퇴직인력 활용방안 강구
 - 여성채용박람회, 인력정보센터, 탁아소 설치 유도 등을 통하여 구직 및 구인수요의 연계 기능 강화

다. 立地 供給의 擴大

■ 中小企業專用 産業團地의 공급 확대

- 현재 조성중인 7개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의 조기 완공을 통한 입지 공급의 확대
 - 97년중 6개 전용산업단지를 완공하여 262개 업체에 분양
-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대금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지원 등을 통하여 입주유도

■ 아파트형공장의 공급 확대

- 현재 건립중인 8개 아파트형공장의 조기 완공 유도 및 신규건립 추진
 - 97년중 2개 아파트형 공장(전주 덕진, 대전 판암)을 완공하여 약 60여개 업체 입주 추진
 - 97년중 1개 아파트형공장을 수도권지역에 추가 건설
-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형공장 건설에 대한 지원 강화
 - 시화, 남동, 창원(동남), 부천 등의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건축비 지원(96~97년 간 120억원 수준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임대아파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 (96) 용지매입비 건축비의 50% → (97) 70%
-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분양아파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 (96) 건축비의 50%(50억원이내) → (97) 토지 건축비의 70% (100억원이내)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동일하게 특별부가세 50% 감면

라. 販路確保 支援의 強化

- 中小企業製品 販賣施設의 확충
 - 중소기업 백화점의 건립(99년 완공)
 - 중소기업제품의 물류, 집배송, 전시판매 및 창고형 도 소매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유통 센터로 활용
 - 중소기업제품 상설판매장의 확대
 - 잠실(93년), 여의도(96년)에 이어 대구상설전시판매장 건립 추진
 - 중소기업 여의도 종합전시장을 활용하여 연중 우수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회 개최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기관 확대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 공표하는 공공기관을 현행 43개 기관에서 57개 기관으로 확대
 - 구매규모 : (96) 25조원 → (97) 30조원 수준
 - 건설공사 발주시 중소기업제품의 관급제도의 정착방안 강구
- 優秀 中小企業 및 製品에 대한 弘報 강화
 - 방송사, 일간지, 경제지 등을 통하여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매강화
 - 인터넷을 통한 홍보, 수출 및 기업간 협력 강화
 - 인터넷 『중소기업관』의 홈페이지 개설업체의 대폭 확대
 - 수록업체 : (96) 215개 업체 → (97) 400개 업체
 - 유통,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설
- 中小企業製品의 販賣促進을 위한 與件 조성
 - 중소기업 상품권 발행의 확대
 - 중소기업 제품용 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 발행규모 : (96) 200억원 → (97) 500억원
 -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개발 확대
 - 중소기업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판매력 증진을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을 확대
 - (96) 귀족, 가파치 등 10개 상표 → (97) 15개 상표
 - 중소기업제품의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상품정보 서비스 확대
 -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상품에 대한 D/B 구축
 - 97년중 2,000개 품목 대상
 - 인터넷, 천리안, 하이텔 등의 전산망에 연결하여 상품정보 제공

마. 去來慣行의 지속적인 改善

- 거래관행 실태조사 강화
 - 주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물품대금 결제조건, 어음결제기간 등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거래관행 발굴 및 개선방안 강구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개별 기업에 대한 거래관행 조사도 병행
- 『中小企業 去來隘路申告센터』운영
 - 중소기업청 본청과 11개 지방조직에 중소기업 거래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개별적인 부당거래 및 금융관행 신고창고로 활용
 -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 모색

바. 租稅負擔의 경감

- 최저한세율의 인하
 -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인하
 - (현행) 12% → (97) 10%
-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도입
 -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전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
- 중복지원 배제조항의 폐지
 - 중소기업이 특별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國産機械購入에 外貨表示證券 發行 中小企業 借入金利率는 Libor+2%가 上限

정부에서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8-11조의 규정에 의거 국산기계구입 시 외화표시증권 발행과 관련, 97. 2. 5자로 재정경제원 고시 제 1997-8호가 고시되었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의 투자와 국산자본재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원장관 사회간접자본확충 및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증권 발행 통첩

제 1 조 (정의) 이 통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2. "제1종시설 사업자"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사회간접자본관련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법인중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중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3조 및 별표에서 정하는 여신금지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일반대기업"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3조 및 별표에서 정하는 여신금지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이외의 자를 말한다.
6. "시설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자신의 생산활동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계, 장치 및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부분품 및 사무용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7. "국산시설재"라 함은 제6호의 시설재중 국산부품의 사용비율이 가액기준으로 50%를 넘는 것으로 국내기업이 생산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음식 및 오락업의 영위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재는 제외한다.

8. "순공사비"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채무비 비율"이라 함은 최근 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 평균채무액을 최근 4년간 평균일반재원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이때 채무액은 지방채 원리금과 채무부담상환액을 합한 금액을, 일반재원은 지방세·보통교부세·경상세·외수입·조정교부금을 포함한다.

제 2 조 (지방자치단체의 외화증권 발행)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통첩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해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2. 채무비 비율이 20%이하인 단체
3. 전년도 자체재원(지방세 및 경상세의 수입) 징수실적이 전전년도 자체재원 징수 실적의 90%이상인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가 이 통첩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외화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산업단지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연계도로 등 산업단지관련 핵심 기반시설의 확충사업

2. 당해 지방자치단체 물류비의 현저한 절감과 직결되는 도로건설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한 전대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국민경제 여건, 외환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용도로 발행하는 외화증권에 대해 연간 발행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연간 발행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2항의 용도로 외화증권발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외화증권발행계획을 신청받아 12월 20일까지 외화증권발행예정자를 선정하여 내무부장관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재정경제원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외화증권발행예정자를 선정함에 있어 외화증권 발행희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규제완화 등 기업활동 지원정도, 물가안정 등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의 우선순위 및 발행규모를 결정한다.

⑥ 제2항의 용도로 외화증권발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외화증권발행계획신청서를 11월 15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내무부장관은 외화증권발행계획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자 요건 · 사업타당성 상환능력 및 발행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11월 3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외화증권발행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외화증권 발행계약 10일 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당해 외화증권 발행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은 위의 발행 신고에 대해 외화증권 발행자요건 · 용도 · 차입금리 · 발행규모에 대해 이 통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발행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신고를 한 자가 외화증권발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외국환관리규정 제10-8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계약의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이 통첩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외

화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의화예금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당해 예금주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적합한 사용임을 확인받아 인출 ·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의 분기별 예치 및 인출 내역을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제1종시설 사업자의 외화증권발행)

① 제1종시설 사업자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순 공사비가 5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통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종시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외화를 당해 민자유치사업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가 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외화증권 발행, 국내 금융기관 외화표시 대출 및 차관도입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연간 외화차입의 총액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당해사업의 연간 순공사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범위내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순공사비가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사업 : 5천만불
2. 순공사비 1조원 이상 사업 : 1억불

④ 제2항의 용도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제1종시설사업자는 당해 외화증권 발행계약 10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당해 외화증권의 발행에 대해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고를 한 자가 외화증권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외국환관리규정 제10-8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계약의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통첩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제1종시설 사업자는 외화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의화예금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당해 예금주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적합한 사용임을 확인받아 인출 ·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종시설사업자의 분기별 예치 및 인출내역을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증권발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신의 생산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국산시설재를 50% 이상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산시설재 구입을 위해 이 통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2. 제1종시설 사업자
3. 사회간접자본관련 공공기관
4. 일반대기업

② 제1항 각호의 자가 국산시설재구입을 위해 발행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발행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 : 국산시설재구입자금의 100% 이내

2. 제1항 제4호 해당자 : 국산시설재구입자금의 70% 이내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국민경제의 여건, 외환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 통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되는 외화증권의 연간 및 반기별 발행한도를 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장관은 외화증권의 연간 및 반기별 한도를 운용함에 있어 1사당 발행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통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외화증권 발행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1. 외화증권발행계획의 접수
2. 외화증권발행예정자 선정을 위한 요건평가

⑤ 국산시설재의 구입을 위해 이 통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의 발행을 희망하는 자는 매반기 시작 30일 전까지 별표 제2호의 서식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외화증권발행계획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총재는 외화증권발행계획의 신청접수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한국산업은행총재는 제5항의 신청을 한 자중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 대해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항목별 점수 및 항목별 점수의 합계를 산정하여, 그 결과를 외화증권발행계획 신청서와 함께 매 반기 시작 15일 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재정경제원장관은 제5항의 외화증권발행계획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반기별 외화증권발행 한도범위 내

에서 중소기업 제6항의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높은 자의 순으로 외화증권발행예정자를 선정하여 반기시작 10일전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서 외화증권발행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외화증권발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해 외화증권 발행계약을 체결하기 20일 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외화증권발행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화증권발행예정자로 선정된 자가 그 선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발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당사자에 대한 외화증권발행예정자 선정은 취소된다.

⑨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외화증권발행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외화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당해 외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외화증권 발행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제5항의 외화증권발행계획을 신청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국산시설재 구입비율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이를 외화증권발행계획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⑪ 이 통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산시설재구입을 위해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자는 당해 외화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적합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국산시설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직접 인출하여야 한다.

⑫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1항의 예치 및 인출의 분기별 내역을 다음분기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차입금리)

이 통첩에 따라 발행되는 외화증권의 발행금리는 지급보증료를 제외한 총조달비용(All-in-Cost)이 Libor+1%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발행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Libor+2%를 상한으로 한다.

제 6 조 (적용배제)

이 통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되는 외화증권에 대해서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0-80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시행일)

- ① 이 고시는 199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재정경제원고시 제 1996-28호는 이 통첩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 8 조 (경과조치)

- ① 이 통첩의 최초 시행을 위해 제2조 제4항의 "12월 20일까지"는 "1997. 3. 15일까지"로, 제 2조 제6항의 "11월 15일까지"는 "1997. 2. 15일까지"로, 제 2조 제7항의

"11월 30일까지"는 "1997. 2. 28일까지"로, 제4조 제5항의 "반기 시작 30일 전까지"는 "1997. 2. 15일까지"로, 제4조 제6항의 "반기 15일 전까지"는 "1997. 2. 24일까지", 제4조 제7항의 "반기시작 10일 전까지"는 "1997. 2. 28일까지"로 각각 본다.

② 이 통첩의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청한 외화증권발행계획은 이 통첩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외화증권발행계획 신청 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외화증권발행계획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발행자 요건	해외차입금 잔액 에 대한 원리금 상환연체 여부				
	채무비 비율 (기준연도 명시)				
	자체재원정수실적	⑤ - 1 직전연도		⑤ - 2 전전연도	
발행목적 및 발행조건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주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발행예정금액			만기	
	발행증권종류			이자율	
증권발행 예정시기					
<p>사회간접자본확충 및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증권발행통첩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재정경제원장관 귀하</p>					
<p>첨부서류 : 사업계획 세부내역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해외차입금 잔액 및 원리금 상환내역 1부</p>					

〈별표 제3호〉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증권발행예정자 선정기준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비고
	평가대상비율	배점	
①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액] × 100	- 50 % 초과 - 40 ~ 50 % - 30 ~ 40 % - 20 ~ 30 % - 20 % 이하	5 4 3 2 1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산되는 자기자본비율 적용
② 국내금융기관 차입 의존도 [금융기관대출금/부채총계] × 100	- 10 % 미만 - 10 ~ 20 % - 20 ~ 30 % - 30 ~ 40 % - 40 % 이상	5 4 3 2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주택은행, 단기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포함
③ 국내증시조달비중 [직전사업연도국내증시조달액/직전사업연도총자산증가액] × 100	- 5 % 미만 - 5 ~ 10 % - 10 ~ 20 % - 20 ~ 40 % - 40 % 이상	10 8 6 4 2	직전사업연도국내증시조달액은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발행액 및 유상증자액, 주식발행초과금 포함
④ 국산시설재사용비율 [국산기계구입액/전체기계구입액] × 100	- 80 % 이상 - 70 ~ 80 % - 60 ~ 70 % - 55 ~ 60 % - 50 ~ 55 %	10 8 6 4 2	
⑤ 차입규모	- 1천만불 이하 - 1천만불 ~ 3천만불 - 3천만불 ~ 5천만불 - 5천만불 ~ 1억불 - 1억불 ~ 2억불 - 2억불 초과	10 8 6 4 2 1	
⑥ 합 계		40 점	

2. 동점자 처리기준 : 각 항목 점수의 합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외화증권발행예정자를 선정한다.

- 국산기계사용비율이 높은자
- 차입규모가 적은자
- 자기자본비율이 높은자
- 국내증시조달비율이 낮은자
- 국내금융기관차입의존도가 낮은자

3. 자기자본비율, 국내금융기관차입의존도 및 국내증시조달의존도 적용기준

- 차관도입계획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동종 업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 평균 국내금융기관차입의존비율 및 평균 국내증시조달 의존

비율을 당해기업의 자기자본비율, 국내금융기관차입의존도 및 국내증시조달 의존도로 본다.

- 업종별 평균 국내금융기관차입의존도의 계산은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의 업종별 단기금융기관차입금, 장기금융기관차입금, 기타 고정부채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업종의 부채총계로 나누어 계산한다.

- 업종별 국내증시조달의존도는 자본시장연보(증권감독원)의 업종별 주식 및 회사채 발행금액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의 총자산증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1 기업이 복수의 투자계획으로 외화증권발행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국산기계구입비율 및 차입규모는 신청사업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環境改善特別資金 年利 5%
廢水處理・再活用事業 支援**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에 의거, 1997년도 환경개선 특별회계융자금 지원조건을 환경부 고시 제1997-6호(1997. 1. 23)로 결정고시 하였다. 여기에는 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및 재활용 사업 내용에 대한 지원금 357,736백만원 이 책정되어 있다. 동 고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고시 제 1997-6호

1997년도 환경개선 특별회계융자금 지원 조건

1. 목 적

이 결정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결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이나 융자업무위탁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또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하 "융자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3. 지원규모 및 대상

사 업 명	용 자 대 상	지원규모 (백만원)
1. 지방중소도시 상수도	지방자치단체	50,000
2. 하수처리시설지원	"	50,000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	"	87,718
4. 하수관거정비	"	35,600
5.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	850
6. 재활용산업 육성	시설설치	45,000
	기술개발	
합 계		269,168

4. 융자조건

사 업 명	용 자 조 건			상 환 방 법
	대여(대출)금리 종 전	'97년	대출기간	
1. 지방중소도시상수도	3.0% (3.0%)	2.5% (2.5%)	5년거치 10년상환	○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균등분할
2. 하수처리시설지원	신 설	4.5% (4.5%)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	5.0% (5.0%)	"	"	"
4. 하수관거정비	"	"	"	"
5.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6.0% (6.0%)	5.5% (5.5%)	3년거치 7년상환	"
6. 재활용산업육성	6.0% (6.5%)	5.5% (6.0%)	"	"

5. 융자범위

사 업 명	용 자 금 용 도	지 원 비 율
1. 지방중소도시 상수도	○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및 농어촌생활용수개발지역 이외 지역의 상수도개발사업비	○ 시지역 : 50% ○ 군지역 : 60% ○ 가뭄지역 : 10%가산
2. 하수처리시설 지원	○ 낙동강·금호강 유역의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설치 사업비	○ 사업비의 50%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	○ 연안지역 및 광주송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 광역시 : 50% ○ 일반시 : 70%
4. 하수관거정비	○ 서울시 하수관거 개보수비	○ 50%
5.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설치비	○ 30% ~ 70%
6. 재활용산업 육성	시설 설치	○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자금
	기술 개발	○ 기술개발추진에 필요한 연구용 및 시제품 제작용 기계장치, 기자재 구입비와 소요운전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6. 용자기관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업무를 사업별로 용자업무 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용자금을 대여한다.

용자업무위탁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용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용자사업의 경우 용자금을 직접 대출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용자사업은 용자취급은행을 통하여 대출한다. 다만, '96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된 경유차후처리장치 사업비 50억원은 "1996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금지원 조건 등 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자하되, 용자요강 공고 및 용자승인 업무는 용자지원을 받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용자업무 위탁기관은 동 용자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과 용자약정을 체결(취급수수료 0.5%)하여 용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사업별 용자기관〉

사업명	용자기관(지원체계)
1. 지방중소도시상수도	환경부 → 환경관리공단 → 지자체
2. 하수처리시설지원	"
3. 연안지역하수 처리장	"
4. 하수관거정비	"
5.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
6. 재활용산업육성	환경부 → 한국자원재생공사 → 은행 → 사업자

7. 용자절차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용자절차

1) 용자예산 편성

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4. 30까지 용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여 전년도 10. 15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용자금을 자체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용자신청 및 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및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용자결정내역을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자결정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용자금 대출을 요청한다.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용자약정을 체결하고 용자금을 대출한다.

3)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자사업추진실적, 시설착공·준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용자금 집행현황 등을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용자절차

1) 용자승인신청

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용자요강공고일부터 해당 용자금 소진시(용자승인완료일)까지 용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용자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용자업무 위탁기관에 용자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2) 용자승인

용자업무위탁기관은 용자업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자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용자지원여부 및 용자승인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용자업무위탁기관은 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용자승인내역을 최초인출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후 5일 이내에 신청자와 용자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용자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중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자업무위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자승인금액 대비 총 소요금액이 30%이상 감액되는 경우에는 용자업무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용자금 대출 및 인출

용자취급금융기관은 용자금 대출시 시설의 설치 또는 제작현장이나 용역제공 등을 확인하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자금의 10% 범위내에서 계약금 또는 선금급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용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인출기간 내에 해당 용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자금은 최초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월 자금은 이월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한 후 전액인출하여야 한다.

4) 용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용자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인출기간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거나 용자금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출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용자승인이 자동취소된다.

용자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자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자심사일 이전에 철회하여야 하며, 심사일 이후에 철회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비사업자가 정순위 사업자로 승인되기 전에 예비사업자 선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용자승인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용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용자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자는 용자업무 위탁기관이 인정할 만한 별도의 보완조치 없이 동일건으로 당해연도에는 용자신청할 수 없다. 다만, 용자금을 용자승인신청서의 사업계획이 아닌 타 목적에 유용함으로써 용자승인이 취소되어 용자원리금이 회수된 사업자는 회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용자업무 위탁기관에 용자신청할 수 없다.

5) 사후관리

용자취급금융기관은 용자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용자금이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용자취급금융기관은 용자금이 타목적에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유용된 용자원리금을 회수하여 용자업무위탁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용자취급금융기관은 유용된 용자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용자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용자금잔액에 대하여 당해 용자취급금융기관의 최고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징수하여 용자업무위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실적보고 등

용자업무위탁기관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완료후 2년간 사업결과의 효과 및 애로사항 등을 보고받아 분석·관리하고 필요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기술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8. 기 타

동 용자금지원조건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기획예산담당관실(전화 504-9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本誌『골판지 포장 · 물류』 5대 캠페인

<p>① 일등국민 덕목함양운동</p> <p>② 포장 · 물류산업 세계화 운동</p> <p>⑤ 나무 · 물 · 공기 청정화 운동</p>	<p>③ 좌측통행 준법운동</p> <p>④ 농촌 되살리기 운동</p>
--	--